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 해양폐기물(선박, 소금 등)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 해양폐기물(선박, 소금 등)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 4.(화) ~ 2022. 1. 20.(목)
3. 공고사유 : 불법적치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해양폐기물(선박, 소금 등)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죽교동 701번지 내 불법시설물을 적치한 자)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당사자께서는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목포해양대학교 소관 국유재산 내 사용허가 받지 않고 해양폐기물(선박, 소금 등)을 무단 적치하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였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022년 1월 18일까지 위 국유지 내 불법해양폐기물(선박, 소금 등)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자진 철거하고 국유지를 원상 회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서 대집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위 당사자로부터 징수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1. 「국유재산법」 제74조 조문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2. 「행정대집행법」 제2조 조문내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p>				

		징수할 수 있다.					
		3.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조문내용 :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목포해양대학교				
		부서명	재무팀	담당자	박귀수		
		주소	목포시 죽교동 해양대학로 91				
		전화번호	061-240-7081	팩스번호	061-242-5176		
		전자우편	guisu@mmu.ac.kr				
		제출기한	2022년 1월 20일까지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재무팀(담당 박귀수, 전화 061-240-708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3.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불 임

위치도

○ 소재지 :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불법

사진첩



불법시설물 (소금)



불법시설물 (선박 및 기타)